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

440-805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화물공제 경기회관6층) TEL 031-242-3355, FAX 031-246-7947
 업 무 과 과 장 : 안 태 영 담 당 자 : 김 회 순

문서번호 : 경기 업무 제 호

시행일자 : 2014. 12.

수 신 : 각 조합원사 대표이사

참 조 : 공제(보험)담당자

선결		지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본 부 장
	번호		지 부 장 전 결
	처 리 과		차 장
담 당 자			과 장

제 목 : 2014년 제7회 본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통보(1,2종 기본분담금 조정 등)

1.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14년 제7회 본부 운영위원회('14.11.28) 의결 및 본부 기획 제4000호('14.12.11) "기본분담금 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3.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중인 3종, 4종, 특수작업용 기본분담금 조정은 과도한 손해율 및 경영개선을 위해 기본분담금을 인상 조정한 반면, 금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담보(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종목간의 손해율 편차를 해소하여 합리적인 분담금 관리를 기하기 위해 1종, 2종 차량의 기본분담금과 특별요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정내용 및 요지

1) 1종, 2종 기본분담금 조정

□ 조정 사유

- 담보종목간 손해율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의 기본분담금은 인하하고 인하된 폭 만큼 대물배상 기본분담금 인상조정

- 이면계속 -

▶ 과거 3년간 1종, 2종 담보간 손해율 현황

구 분	종 목 별			합 산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1 종	79.8%	67.7%	147.2%	102.1%
2 종	81.9%	71.8%	150.0%	103.3%

- 대인, 대물 종목간의 손해율 편차가 심화

2) 특별요율 일부 조정

□ 조정사유

- 1종, 2종 기본분담금 조정시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는 인하하고 대물배상은 인상됨에 따라 일반공제(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만 적용하는 특별요율 적용차량의 경우 분담금이 인상되는 결과 초래되어
- 분담금 인상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특별요율 일부 조정(3% ~ 5% 인하)

나. 조정방식

1) 1종, 2종 기본분담금 조정

▶ 기준 : 대물보상한도(1억원)

(단위 : 원, %)

차종		현 행 (a)	조 정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대인 I	1종	1,057,200	766,500	△290,700	△27.5
	2종	839,400	622,000	△217,400	△25.9
대인 II	1종	747,300	414,800	△332,500	△44.5
	2종	563,100	348,000	△215,100	△38.2
대물배상	1종	904,600	1,527,800	623,200	68.9
	2종	676,700	1,109,200	432,500	63.9

※ 대인배상 I (책임공제)는 100% 초과 할증이 없는 관계로 100%초과 차량의 경우 분담금 인상요인 발생

- 이면계속 -

2) 특별요율 일부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건인차의 건인종 위험담보요율 ◦기종기장치 자동차요율	120%	117%	△3%
◦위험물적재자동차요율	130%	125%	△5%

다. 조정 후 기본분담금 비교

가) 1종, 2종 기본분담금

▶ 기준 : 기본 100%, 대물보상한도 1억 (단위 : 원, %)

차종		현 행 (a)	조 정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1종	책임	1,057,200	766,500	△290,700	△27.5
	대인	747,300	414,800	△332,500	△44.5
	대물	904,600	1,527,800	623,200	68.9
	합계	2,709,100	2,709,100	-	-
2종	책임	839,400	622,000	△217,400	△25.9
	대인	563,100	348,000	△215,100	△38.2
	대물	676,700	1,109,200	432,500	63.9
	합계	2,079,200	2,079,200	-	-

나) 특별요율 일부 조정

(단위 : 원, %)

차종	대 물 보상한도	건인피건인/기종기(117%)			위험물(125%)		
		현행	조정	차이	현행	조정	차이
1종	1억원	3,039,480	3,039,340	△140	3,204,670	3,194,750	△9,920
2종	1억원	2,327,160	2,326,920	△240	2,451,140	2,443,500	△7,640

라. 시행시기 : 2015. 3. 1 신규·갱신 계약차량부터 적용

별 첨 : 공제분담금표 1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경 기 지 부 장

앞서가는 공제, 신뢰받는 공제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

440-805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화물공제 경기회관6층) TEL 031-242-3355, FAX 031-246-7947

업 무 과

과 장 : 안 태 영

담 당 자 : 김 혜 진

문서번호 : 경기 업무 제 호

시행일자 : 2014. 9.

수 신 : 각 조합원사 대표이사

참 조 : 공제(보험)담당자

선결			지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14년 제5회 본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통보

1.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14년 제5회 본부 운영위원회('14.08.27) 의결 및 본부 기획 제2929호('14.09.12) "기본분담금 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 손해율이 과다하여 경영악화의 주요인인 **3종, 4종(법인용달포함), 특수작업용** 차종에 대한 기본분담금이 **전지부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인상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금번 일부 차종 인상 조정은 경영개선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3종, 4종(법인용달포함), 특수작업용 차종 기본분담금 인상조정 】

□ 인상조정 취지

- 차종 및 담보간 손해율 편차 해소와 과도한 손해율 증가에 따른 경영개선

□ 조정방안

- 과거 3년간 평균 손해율을 평가하여 평가된 손해율이 과다한 **3종, 4종, 특수작업용**

- 이면계속 -

차종에 대해서 손해율이 양호한 대인 I, 대인 II는 기본분담금을 인하하고 인화된 금액을 포함하여 손해율이 과다한 대물기본분담금 인상 조정 하는 방안으로 기본분담금 조정

- 금번 조정이 없는 1종, 2종 차종은 손해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조정예정

◇ 최근 3개년간 손해율 현황

구분	적정손해율	전체평가손해율 / 경기지부	전체초과손해율 / 경기지부
3종	100%	125.3% / 124.3%	25.3% / 24.3%
4종		134.6% / 137.2%	34.6% / 37.2%
특수		123.6% / 133.2%	23.6% / 33.2%

□ 조정을

구분	손해율개선에 필요한 인상요율	실제인상율(평균)	보상한도별 인상율
3종	25.3%	12.6%	8.6%(최저) ~ 24.9%(최대)
4종	34.6%	17.3%	12.0%(최저) ~ 28.2%(최대)
특수	23.6%	11.8%	8.3%(최저) ~ 19.1%(최대)

- 조합원의 일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요인의 50% 수준만 반영
- 보상한도가 높을수록 인상율 증가

□ 조정된 기본분담금 비교

- 기본 100%, 대물보상한도 1억원일 경우

(단위 : 원, %)

구분		현행(A)	조정(B)	차액(B-A)	인상율
3종	책임	516,100	553,200	37,100	7.2
	대인	415,400	186,100	△229,300	△55.2
	대물	403,900	753,200	349,300	86.5
	계	1,335,400	1,492,500	157,100	11.8

- 이면계속 -

440-805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화물공제 경기회관6층) TEL 031-242-3355, FAX 031-246-7947
 업 무 과 과 장 : 안 태 영 담 당 자 : 김 혜 진

구분		현행(A)	조정(B)	차액(B-A)	인상율
4종	책임	515,100	462,300	△52,800	△10.3
	대인	248,900	188,900	△60,000	△24.1
	대물	264,100	531,300	267,200	101.2
	계	1,028,100	1,182,500	154,400	15.0
특수 작업용	책임	998,400	956,600	△41,800	△4.2%
	대인	696,800	573,300	△123,500	△17.7%
	대물	618,100	1,022,700	404,600	65.5%
	계	2,313,300	2,552,600	239,300	10.3%

· 조정된 기본분담금 대비 손보사 보험료 비교

(연간 보험료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우리조합		손보사 보험료 (c)	손보사 대비	
	현 행 (a)	조 정 (b)		현 행 (a/c)	조 정 (b/c)
3종	1,335,400	1,492,500	1,970,076	67.8% (△634,676)	75.8% (△477,576)
4종	1,028,100	1,182,500	2,015,909	51.0% (△987,809)	58.7% (△833,409)
특수	2,313,300	2,552,600	2,988,970	77.4% (△675,670)	85.4% (△436,370)

- * 주) 1. 손보사 : S화재 26세이상, 표준요율 100%, 대물 1억원, 물적할증 50만원 기준('14. 6월초 기준)
 2. 연간 분담금(보험료) : 대인 I·II, 대물(1억원) 합산 보험료

□ 시행시기 : 2014. 11. 1 신규·갱신 계약차량부터 적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경 기 지 부 장